

“법정교육관련 개정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교육)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에너지관리대상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 기간 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4.7.12>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7.12>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 8 19]

부칙 <제239호, 2004.7.1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등록 또는 선임된 자로서 계속하여 동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종사하는 자는 제50조제1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에너지관리공단·시공업자단체·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및 한국열관리사협회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2]

<산설 2004 7 12>

<비고>

- 1 난방시공업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교육수료 및 교육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제1종·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최초로 등록된 날부터,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최초로 선임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3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4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중대형보일러조종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압력용기조종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5 산업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의 기관 기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여 추가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의 기관 기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3의2]

<산설 2004 7 12>

<비고>

1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	1일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신고된 자	에너지관리공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법정교육 과정

▶ 교육대상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8조에 의하여 현재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로 채용되어 있는자

▶ 중대형보일러 조종자 과정

- ㉗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신규 선임된 자로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조종자
- 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되어 조종자로 선임된 자

▶ 소형보일러·압력용기 조종자 과정

- ㉗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신규 선임된 자로 제1호가목의 대상 보일러 이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조종자
- 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되어 조종자로 선임된 자

새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크린텍 <http://배관보수제>
www.cleantech21.com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83-1
· 전화: 031-409-6262
· FAX: 031-408-4114
· 서울지역: 02-2272-8644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PRES

손으로 반죽하여 붙여만 준다.

배관보수 접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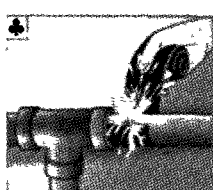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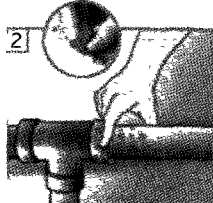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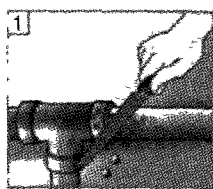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루미늄용, 플라스틱용, 수중용, 콘크리트용, 나무용

이액형 보수제

▶주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제를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ALUMINUM/STAINLES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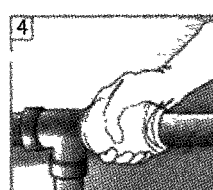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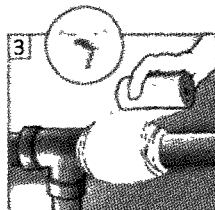
수처리 케미칼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미생물 제어제, 세관제, 핀코일세척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사용방법

- 1 뽕뽕을 잡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 2 압력을 제어할 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 ♣ 압력이 제어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 3 보수테이프를 물에 50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 4 디감을 후 감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



목욕탕전송 다목적세제 BMP Cleaner

- ▶대리석 바닥 물때 제거
- ▶유리 및 거울 얼룩 제거
- ▶양변기 및 소변기 등의 오염물 신속제거

락스보다 냄새, 피부 자극이 적으며 세척력은 더 우수하며 거품이 적어 린스가 용이합니다.